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50
----------	------

2024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찬성자 17명)
나. 발 의 일 : 2024년 5월 27일
다. 회 부 일 : 2024년 5월 30일
라. 상 정 일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인해 남녀 노소 모든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주요 대상 및 동기가 불특정해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발생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정보교류 협력 등 협력체계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교류와 협력 등에 대한 실질적 근거 조항 마련.

나. 주요내용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4.6.4. ~ 6.8.)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발생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제1항 신설)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 체결(제2항 신설)

-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경찰청이 2023년 한 해 동안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로 총 44건(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이며,¹⁾
 -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오는 등²⁾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안 제6조 신설) 조문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23년 8월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으며,³⁾ 2023년 8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1) 세계일보, 경찰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 총 44건”, 2024년 2월 7일자 보도 참고.

2) 연합뉴스, “경찰, 서울역 살인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2024년 5월 24일 보도 참고.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행안부.법무부.보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국무총리 담화문(2023.8.23.) >

- ▶ 치안력 강화(특별치안활동 지속, 지자체와 협업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의무경찰제 재도입)
- ▶ 사법적 조치('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공중협박·공공장소 흡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 ▶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개선(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방안 검토)
- ▶ 범죄피해자 지원('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 ▶ 민간 자율방법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

○ 더욱이, 자치경찰위원회도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하여 지난해 8월 특별치안활동으로 CCTV 관제센터 연계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8.4.), 살인 예고글 등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8.16.) 하였으며,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12개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명문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특별치안활동 추진사항 >

- 「물지마 범죄 대비 범죄예방활동 강화 지휘」 자경위 의결 : 8. 4.
 - 변화가 가시적 위력순찰 강화, CCTV 관제센터 연계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
- 자경위 - 서울경찰청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개선 방안 회의 : 8. 16.
 - 여성안심귀갓길 내 첨단기술을 접목한 운영 개선안 논의 등
- 살인 예고글 등 자경위-서울경찰청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8. 18.
 -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살인 예고글 관련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협조 요청(→교육청)
- 관광·지하철경찰대 방문, 신림역 및 관악산 둘레길 현장점검 : 8. 4. ~ 18.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3년 9월, 8면 재인용.

건복지부·경찰청 참석, 관련 정책 공유와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 강구”, 2023년 8월 21일자 참조.

〈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자치경찰위원회 협력기관 현황 〉

연번	협력기관	협력 내용
1	자율방범연합회	취약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 등
2	한국청소년육성회	청소년 비행 예방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치경찰 발전방안을 위한 자문
4	서울연구원	자치경찰 제도 정착연구를 위한 회의(22.12.)
5	한국행정연구원	자치경찰제,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공조 등을 위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한국행정연구원 업무협약(23.9.14.)
6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범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
7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실무협의
8	서울시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참석
9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협력
10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및 처리,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등
11	한국경찰법학회	이상동기 범죄와 자치경찰 현안에 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23.12.1.)
12	한국경찰연구원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 개최(23.3.3.)

- 다만, 안 제6조제1항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유관기관”이라고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은 서울경찰청의 범죄예방활동을 협력·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유관기관”에서 서울경찰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 “유관기관”은 “관계 기관”, “유관 기관”, “관련 기관”으로 정비를 권고하고 있는바,⁴⁾ “관계 기관”으로 하고,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단체”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음.

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2023년 12월, 부록 : 정비 권고 용어, 50면 참조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u>유관기관과</u>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u>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자치구의 협력·지원이 중요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에서 서울 특별시경찰청과 자치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제1항).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50
----------	------------

제안연월일 : 2024년 6월 28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자치구의 협력·지원이 중요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자치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유관기관과”를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일 부 개 정 안	수 정 안
<p>< 신 설 ></p>	<p><u>제6조(협력체계의 구축)</u></p> <p>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u>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u>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u></p>	<p>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p> <p>-----</p> <p>-----</p> <p>-----</p> <p><u>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u> -----</p> <p>-----.</p> <p>② (개정안과 같음)</p>
<p><u>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u> (생략)</p>	<p><u>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u> (현행 제6조와 같음)</p>	<p>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개정안과 같음)</p>
<p><u>제7조(시행규칙)</u> (생략)</p>	<p><u>제8조(시행규칙)</u> (현행 제7조와 같음)</p>	<p>제8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